# 학 교 헌 장

학교법인
장훈학원 장훈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64길 26(신길동)
http//www.janghoon.hs.kr
☎ (02)841-4121~5 FAX (02)831-7435

# 장 훈 고 등 학 교 헌 장

장훈고등학교는 학교법인 長薰學園이 弘益人間과 理化世界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미래가 요구하는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학교이다.

본교는 지식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투철한 역사의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자주인, 자유와 진리를 추구하며 끊임없이 실천하는 지성인, 진취적인 소명 의식으로 새 역사 창조에 앞장서는 미래인을 육성하는 것을 건학 이념으로 한다.

본교에서는 창의성과 다양성이 요구되는 21세기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감은 · 극기 · 봉사」를 강조하고 있다.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존중하며 국가를 사랑하는 기본적 생활 태도를 내면화하면서(感恩), 급격한 사회변동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성숙한 자아의식을 확립하게 함은 물론 자기 통제능력과 강인한 정신력을 기르고(克己), 아울러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이웃과 사회발전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는(奉仕) 새로운 한국인의 육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본교는 지리적으로 서울의 서남부 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회사원, 상업, 자영업에 종사하는 학부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0여 년간 의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통하여 괄목할 만한 교육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목적) : 본교는 홍익인간과 이화세계를 신조로 대한민국의 반만년 역사를 계승하여 다양하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이다.

다가오는 지식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선도할 자주적・지성적・미래지향적 인간 육성에 노력할 시기가 되었다. 이에 교육과정, 학사관리, 인사관리, 후생복지 등의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여 해결함으로써 유능하고 성실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제2조(교육목표) : 본교는 설립목적을 구현함에 있어 감은, 극기, 봉사를 바탕으로 미

래 사회를 이끌어갈 헌신적·의지적·사회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 교육 목표를 둔다.

1. 올바른 인성함양과 창의적 교육으로 국가발전에 공헌하는 헌신적 인간을 기른다.
2. 미래의 변화에 주체적으로 적응해 갈 수 있는 합리적, 창조적 능력인을 기른다.
3. 강인한 정신 교육으로 민족 문화를 주도할 의지적 인간을 기른다.
4.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 인간을 기른다.

제3조(교육프로그램) :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제시

## 제2장 교육과정

제4조(교육과정 편성·운영)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교육과정표 첨부)

제5조(교과서) : 관할청의 허가를 받은 검인정교과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새 교과서를 선정할 때는 각 교과협의회의 추천과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최종 확정할 수 있다.

1. 교사의 교재 및 학습자료 개발을 위하여 학교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 새 교과서를 자체 제작할 때에도 교과협의회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 제3장 교육여건

제6조(교원) : 우리학교의 교원은 관할청의 교원정원배정 기준으로 교육 과정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교원을 확보한다. 영재교육에 대한 이론과 실제, 교육 개혁에 관한 연수를 수시로 실시하여 교육력을 제고한다.

1.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강사와 기간제 교원, 산학겸임교사 그리고 원어민 강사를 확보한다.
2. (삭제)

제7조(시설설비) : 본교의 교육시설은 교육과정을 이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통교실, 특별교실(영어전용교실, 과학실) 등을 확보하고 앞으로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제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 (삭제)

제8조 (학교규모 및 학급 규모) : 학급 수는 학년당 9학급으로 하고, 학생 정원은 학급당 35명을 기준으로 한다.

# 제4장 학사관리

제9조(학생선발)

1. 모집 단위 :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학생 모집 시기 : 전기에 일반계 고등학교에 앞서 실시한다.
3. 전형 방법 : 필기고사 또는 교과지식을 구술하는 방식의 면접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지원 후추첨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일반학생 : 학생정원의 80%이하 (일정자격기준 이상을 갖춘 지원자 중 추첨하는 방식으로 선발하고 체육특기자를 포함한다.)
   나. 사회적배려자 : 학생정원의 20%이상을 선발하며 경제적 배려대상자 및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결원이 발생하면 일반학생으로 대체하지 않고 추가 선발 공고를 실시하여 충원한다.

제10조(학생정원관리)

1. 재입학·전입학·편입학은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자가 본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2. 기타 사항은 초·중등 교육법과 동 시행령 및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학년도, 수업연한)

1. (학년도, 학년제)
   가.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나.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
2. (학기)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어, 제1학기는 여름방학 종료일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3. (수업 연한)
   가. 수업연한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조기 졸업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조기에 졸업시킬 수 있다.
   나. 조기 졸업자 선정 및 인정 평가 방법, 평가 시기, 최종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조기 진급·졸업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4. (수업 일수) 수업 일수는 연간 190일 이상으로 한다

# 제5장 학교운영

## 제1절 인사관리

제12조(교장)

1. 초·중등 교육법 제21조에 의한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장 자격이 없더라도 학식과 덕망이 높으며 풍부한 행정경험과 뚜렷한 교육철학이 있으며 학교 경영능력이

있는 내부 또는 외부인사로 한다.
2. 외부인사를 초빙교장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임용절차 및 계약절차를 거쳐 임용한다.
3. 우리학교의 자율학교 지정해제 시에는 초빙교장은 자동 면직한다.

제13조(교직원)
1. 교원은 소정의 법적 자격과 덕목 및 본교의 건학이념 실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임면규정의 절차에 의거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초빙교원은 인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 한다.
3. 보수는 교육 공무원 보수 지급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산학겸임교원과 원어민 교원 등의 보수는 약정에 따라 지급한다.
4.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당해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 교원으로 임명 할 수 있다.
5. 기간제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한다.
6. 행정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7.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해외 연수, 외부강사 초청 연수, 자체 연수 등을 실시하며, 창의성 수업 선도 교사제 운영과 연구 논문 발간을 지원하고, 각종 연수 및 연구 공모전 참여 교사를 우대한다.

## 제2절 재정운영

제14조(법인회계) : 법인의 예산·결산·수입·지출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15조(학교회계) : 세부적 경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비 등은 학생의 공납금, 법인의 전입금, 잡수입, 학교발전기금 등에 의거 확보한다.

제16조(법인전입금) : 법인전입금은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 이상 부담한다.

제17조(학생납입금) : 연간 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은 일반계고의 300% 이하로 한다. 단, 인건비 인상 등 불가피한 경우 학교운영위회 자문 및 법인 이사회의 심의 의결 후 인상 할 수 있다.

## 제6장 후생복지·지원

제18조(학생장학금) : 학생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19조(학생특별활동)

1. (학생 자치회 활동) 학생 스스로 자치회를 구성하고 규범을 제정·운영하도록 하여 책임을 다하는 민주 시민의 역량을 기른다.
2. (특기 육성) 학교장은 다양한 계발 활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학생들의 특기와 취미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학생 계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비 예산의 일정 비율을 편성 지원한다.

제20조(학생기숙사)

학생 기숙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숙사를 설치·운영한다.

## 제7장 학교운영의 투명성

제21조(학교재정운영 공개)

1. 학교 재정 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은 전산으로 통합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인의 요청이 있을 겨우 본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22조(학사행정 공개)

1.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성적 열람 등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한다.
2. 교육과정편성위원회를 운영하여 참여 의식을 고취시킨다.
3. 교육계획 수립 시 협의회를 통하여 수립한다.

제23조(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및 활동)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임기개시 해당년도 3월1일 학생 수를 기준으로 1,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9인 이상 12인 이내로 하되 학부모 위원은 6인,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은 4인, 지역위원은 2인으로 구성하며,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13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되, 학부모 위원은 7인,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은 6인, 지역위원은 2인으로 구성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자격·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8장 학교발전계획

제24조(학교발전 계획)

1. 교사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육과정 운영, 학교 재정 확충 및 교육 시설의 현대화 등 제반 교육 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 장기계획으로 대강당을 만들어 학생들의 제반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제25조(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

1.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시설을 자유롭게 개방하며,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용한다.
2. 지역사회의 초·중학교 축구부를 육성하여 본교 축구부 발전을 기하며, 프로팀, 국가 대표로 연계되는 축구 사랑, 지역 사랑, 학교 사랑으로 이어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 제9장 보 칙

제26조(학교헌장 변경) : 학교헌장은 학교 교직원회의에서 2/3이상의 찬성을 받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법인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제27조(시범학교 지정 해제 시 재학생 보호대책) : 시범 운영이 해제될 경우 학교 실정을 감안하고 학생·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재학생들에 대한 시범 운영을 졸업 시까지 계속하거나 타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한다.

제28조(공표·시행) : 이 헌장은 2010년 3월 1일 공표 후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헌장은 2013년 07월 30 일(장훈학원 이사회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헌장은 2018년 03월 01일 공표 후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헌장은 2021년 03월 01일 공표 후 시행한다.